

신청번호 1AA-1807-311601  
신청일 2018-07-24 10:51:00  
민원제목 실내공기질관리법  
민원내용

※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(2016.12.23.)을 2016.12.23. 부터 적용 시행하며 ,법 시행 이전 제조.수입.유통중인 자재는 2017.12.22.까지 적합여부 확인 사용하며, 2017.12.23. 부터는 의무적용 시행하여야 되며, 위반시 징역 및 과태료 가 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일선에서 혼선이 있어 질의 합니다.

1.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대한 전면(의무) 시행 은 언제 부터인지요 ?
  - 위반시 단속은 언제 부터 하는지요 ?
  - 감독및 단속은 어느 관청에서 하는지요 ?
2. 2017년 5월 시설물 (연면적 2,000㎡이상 실내주차장 포함)을 건축승인 받고 2018년 3월 신축공사 를 시작 했을 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인지요?
3. 2018년 7월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상업.공동주택 시설물(연면적 2,000㎡이상 100세대 이상 실내주차장 포함) 신축설계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

처리 결과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
담당자 이지한 (033-760-6488)

민원인 신청번호 1AA-1807-311601

접수일 2018-07-24 13:21:19

처리기관 접수번호 2AA-1807-363884

처리에정일 2018-08-01 23:59:59

처리결과(답변내용)

답변일 2018-07-31 11:16:28 처리결과(답변내용)

○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(1AA-1807-311601)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귀하의 민원내용은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○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는 법개정(법률 제13601호, `15.12.22 공포, `16.12.23 시행)에 따라 `16.12.23부터 시행되었으나,

- 시험기관이 선정되는 기간, 건축자재 제조·수입업체가 충분한 양의 제품을 시험검사 받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만 환경부 자체적으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`17년에는 시범점검만 실시하였으며,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계도조치하였습니다.

○ 개정안(법률 제13601호, `15.12.22 공포, `16.12.23 시행)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(`16.12.23) 이후에 「건축법」에 따른 `건축허가신청서` 및 `건축신고서`가 접수된 건축물은

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 적용대상입니다.

○ 해당 건축물은 ‘17년 5월 건축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신거로 보아, ‘16.12.23 이후에 ‘건축허가신청서’ 또는 ‘건축신고서’가 접수됐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, ‘건축허가신청서’ 또는 ‘건축신고서’ 접수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람

－ ‘건축허가신청서’ 또는 ‘건축신고서’ 접수일이 ‘16.12.23 이후인 경우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 적용대상입니다.

－ 참고로 상기 말씀드린 1년 유예는 행정처분만을 우리부 자체적으로 유예한 경우로, 법률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가 함께 유예된 것이 아닙니다.

○ 따라서, 해당 건축물은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 적용대상이 맞으며, 동 건축물이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‘다중이용시설’(실내주차장 등) 및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시설이 있다면, 해당 시설은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 적용대상입니다.

○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지한 주무관(044-201-6797, l3110@korea.kr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,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끝.